

집합투자재산 사전자산배분기준

	승인일	시행일	승인권자
재정	2008.06.27	2008.06.27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1 차 개정	2009.03.02	2009.03.0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2 차 개정	2009.09.24	2009.09.24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3 차 개정	2012.05.09	2012.05.09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4 차 개정	2014.01.27	2014.01.27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5 차 개정	2015.01.26	2015.01.26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6 차 개정	2015.10.05	2015.10.05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7 차 개정	2023.02.07	2023.02.07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8 차 개정	2023.09.15	2023.09.15	대표이사 전결

집합투자재산 사전자산배분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내역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기준은 회사내 운용담당자 등 집합투자재산운용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 ② 이 기준은 증권투자신탁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설정된 펀드를 포함하여 모든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③ 이 기준은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경우, 영 제99조제2항제4호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을 사전자산 배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④ 이 기준은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1항의 단서 및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신탁계약서에 정하여 투자대상자산을 자신의 명의로 직접 취득·처분 등을 실행하는 경우(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단, 집합투자재산별로 각각의 계좌를 두고 계좌별로 주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매

- 가. 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수익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 나.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여 거래소로부터 그 증권이 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수익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1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된 채무증권을 포함한다)의 매매

- 가. 국채증권
- 나. 지방채증권
- 다. 특수채증권
- 라. 사채권(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 마. 제18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어음증권 또는 전자단기사채

2.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3.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4. 법 제251조제4항에 따른 대출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의 매매
 - 가. 은행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바. 증권금융회사
 - 사. 종합금융회사
 - 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8.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
- 8의2. 환매조건부매매
9. 그 밖에 투자신탁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사전자산배분”은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투자재산신탁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 배분내역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운용담당자”는 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③ “매매담당자”는 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운용담당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의 처분 실행을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④ “정보통신수단”이라 함은 전화, 전자우편, 메신저 및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 회사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 및 문서를 송·수신하는 장치 및 컴퓨터프로그램을 말한다.
- ⑤ “당일 발행자산”이라 함은 당일 거래시간 중에 사전예고 없이 발행여부 및 발행조건이 결정되는 채무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등을 말한다.
- ⑥ “종목코드주문”이라 함은 운용담당자가 구체적인 종목코드를 사전자산배분시스템에 입력하는 주문방식을 말한다.
- ⑦ “텍스트주문”이라 함은 운용담당자가 거래대상과 조건 등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주문방식을 말한다.

제4조(개정 등) 이 기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내규의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자구수정 등과 같이 실질적인 내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5조(일반원칙) 회사의 자산배분절차는 다음 각 호의 내용들을 원칙으로 한다.

- ① 회사는 매매와 자산배분에 있어서 관련 법규와 회사 규정을 준수한다.
- ② 모든 고객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은 특정 수익자 또는 특정 투자신탁재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 ③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분리 및 사전자산배분내역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자산배분원칙) (개정 2012.5.9, 2014.1.27, 2015.1.26, 2015.10.05, 2023.2.07)

- ① 운용담당자가 다수의 투자신탁재산별 동일한 매매조건으로 동시에 주문하는 경우 취득, 매각한 자산은 각 펀드에 균등한 가격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② 주문시간이 다른 동일한 종목에 대한 각각의 주문은 별개의 주문으로 본다.
- ③ 공모주, 회사채 등의 수요예측을 통한 자산취득의 경우 운용담당자는 청약일에 투자신탁별로 청약수량을 기재한 사전자산배분명세서를 작성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④ 공모주 및 회사채 등의 청약은 그 실행결과가 법 제 81 조 제 1 항 제 1 호 각목 및 각 투자신탁규약에서 정한 해당 자산의 최대편입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실행해야 한다. (개정 2014.1.27, 2015.1.26)
- ⑤ 회사가 배정받은 공모주 및 회사채는 투자신탁별로 청약수량에 안분비례하여 배정한다.
- ⑥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 사사오입하여 배정하되 잔여수량은 청약수량이 가장 많은 투자신탁에 배정할 수 있다.
- ⑦ 대량매매(시간외 대량매매에 한 한다)의 경우 운용담당자는 참여 대상펀드를 선정하여 CIO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배분 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⑧ 최종 매매체결 수량이 매매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투자신탁재산별 주문비율(주문 주식수 비율, 채권액면 비율)에 따라 동일한 시간에 주문한 다수의 펀드 간에 수량을 안분하여 동일한 가격으로 배분해야 한다. 또한, 투자신탁재산별 수량 배분 후 잔여수량이 발생하는 경우 사사오입하여 배정하되 운용담당자는 최대 주문펀드에 잔여수량을 배분할 수 있다. 또한 거래최소단위(채권의 경우 1억) 대비 소량의 배분만이 이루어져 보유의 의미가 없을 경우에는 배분을 증가시키거나 전혀 배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채권자산의 경우 체결규모가 주문수량에 미달할 것을 예

상하여 투자신탁별 상황 및 운용 필요에 따라 운용담당자가 우선순위 또는 비율을 사전에 배분조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명시한 내용대로 배분할 수 있다.

제7조(콜론 및 환매조건부매매의 특례)

- ① 운용담당자는 투자신탁별로 콜 및 RP시장의 특성, 각 투자신탁의 운용전략 및 운용 제한 등을 감안하여 콜 또는 RP거래를 할지 여부를 설정일, 거래하고자 하는 날 등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각 투자신탁별로 주식 및 채권, 기타 전략별 투자자산 등을 투자하고 남은 운용가능한 유동성자금을 RP(환매매수조건부매매) 및 콜론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운용 본부의 『RP 및 콜론 운용지침』에 따라 이를 합산하여 통합 운용 및 거래를 할 수 있다.
- ③ ②항에도 불구하고 설정 1개월 내 투자신탁, 해지 예정인 투자신탁 또는 단기금융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투자신탁 등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또는 추가배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자산배분내역에 관한 장부 및 서류)

- ① 운용담당자는 자산의 취득, 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매매하고자 하는 자산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종목, 주문금액, 수량, 가격, 주문시간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와 투자신탁별로 배분 내용을 기재한 자산배분명세서를 전산시스템에 작성하여야 한다.
-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전산시스템의 장애,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운용담당자는 [별지1]에 따라 컴플라이언스팀의 승인을 받아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주문내역을 작성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매매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를 전산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운용담당자와 컴플라이언스팀은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의 적정성과 이행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각 투자대상자산의 사전자산배분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이 기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그 시스템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요청하여야 한다.
- ⑤ 운용담당자는 제17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체결된 자산배분명세서를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전산으로 자산배분명세서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매매주문서의 작성)

- ① 운용담당자는 자산의 취득, 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매매하고자 하는 자산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종목, 주문금액, 수량, 가격, 주문시간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를 전산상에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운용담당자는 매매주문서상의 종목은 특정종목, 한국금융투자협회 채권종류별 종목, 신용등급별 종목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매매주문서상의 가격주문은 해당자산의 단가 혹은 수익률 등으로 표시되며, 지정가격, 시장가격뿐만 아니라 특정 주문방법 혹은 범위를 정하여 매매담당자에게 주문을 접수할 수 있다.
- ④ 운용담당자는 제3항의 주문과 관련하여 투자대상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에 적합한 주문방식(종목코드주문, 텍스트주문, 텍스트주문과 종목코드주문의 병행 등)을 적용하여 주문할 수 있다.
- ⑤ 운용담당자는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주문이 체결되기 전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매매주문서를 취소하고 새로이 작성하는 방법으로 주문을 정정할 수 있다
- ⑥ 주문시 펀드별로 주문계좌를 지정하여 다수의 종목에 대한 매매주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종목, 수량만을 기재하고, 매매금액 및 가격 등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매매주문서의 실행)

- ① 매매담당자는 사전에 작성된 매매주문서를 기초로 하여 자산의 취득, 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산배분내역서의 작성)

- ① 매매담당자는 매매주문서와 체결내역서를 기초로 하여 자산배분내역서를 전산상에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자산배분내역서는 체결된 종목에 대하여 체결가격, 배분가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펀드별로 매매주문서와 상이한 수량으로 배분될 시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운용담당자의 업무)

- ① 운용담당자는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중개업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투자대상자산 관련 정보(명칭, 가격, 수량, 시장동향 등)의 수신 및 단순문의를 할 수 있다.
- ② 운용담당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과 관련하여 투자중개업자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투자중개업자 등을 결정하는 행위
 - 2. 투자중개업자 등에게 매매의사를 암시하는 행위
 - 3. 투자중개업자 등과 종목에 대한 수량·가격을 협의(운용담당자의 협의결과에 근거하여 매매담당자가 해당 투자중개업자 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 등과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제13조(매매담당자의 업무)

- ① 매매담당자는 운용담당자가 사전에 작성한 매매주문서를 기초로 하여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
- ② 매매담당자는 매매주문에 대한 체결 및 미체결 내역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운용업무와 매매업무의 분리)

- ①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구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와의 업무구분은 별도 팀 운영 등 조직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력 구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운용과 매매의 조직 분리가 아닌 담당자 개인별 전담업무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전담업무 분리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운용담당자 또는 매매담당자 부재 시 업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대리자는 지정기간 동안 본인의 본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회사는 업무대리자와 대리하는 업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 1. 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 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취득·처분 등을 하는 경우
 - 2. 투자신탁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의 경우
 - 3.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프로그램매매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
 - 4.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제15조(사전자산배분에 관한 기준의 공시) 회사는 사전자산배분에 관한 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16조(당일 발행자산의 특례) 당일 발행자산(당일 거래시간 중에 사전예고 없이 발행여부 및 발행조건이 결정되는 채무증권, 양도성예금증서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용담당자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중개업자 등과 직접 정보통신수단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주문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운용담당자는 주문체결이 확정되는 경우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신탁별 코드 및 배분수량 등 최소한의 내용을 기재한 주문내역을 매매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며 운용담당자는 주문체결 확정시점으로부터 15분 이내에 투자신탁별

주문내역을 자산배분시스템에 입력한다. (신설 2015.10.05)

제17조 (사전자산배분내역의 정정) 자산배분내역서에 따른 체결자산의 배분은 원칙적으로 정정이 불가하다. 다만, 시스템 오류, 운용담당자의 주문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3 사전자산배분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정정을 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불가피한 사유 및 사건의 원인, 관련된 이해상충이 없음을 설명하는 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09.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6월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일반사무관리회사 주문 관리 시스템 (Portfolio Management System 및 Order Management system, 이하 “PMS” 통칭) 장애 발생시 매매주문서 작성 절차

1. 주문관리시스템 장애로 주문입력이 불가능한 경우 운용역 또는 트레이더는 준법감시인 및 컴플라이언스팀에 즉시 통지한다.
2. 오전(9시~12시) 중에 주문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정오(12시)까지는 사무수탁사가 장애를 해소할 때까지 주문을 보류한다.
3. 정오(12시) 이후에도 주문시스템이 정상화 되지 않은 경우, 운용역은 매매하고자 하는 자산에 대하여 투자신탁별로 종목, 주문금액,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를 작성한 후, 주문내역이 운용제한을 준수하는 지 스스로 점검을 수행한 후 컴플라이언스팀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한다.
4. 컴플라이언스팀은 매매주문서를 기초로 법령 및 운용제한 위반 여부를 점검한 후 이메일로 주문 승인을 한다.
5. 제3호에도 불구하고, 신규 설정 및 대량 해지, 이관 및 이체에 대응을 위한 운용주문의 경우, 주문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트레이더는 컴플라이언스팀의 승인 여부를 확인한 후 동 기준 6조에 따른 전자산배분원칙에 따라 매매주문을 체결한다.
7. 운용역은 전산시스템이 정상화되는 당일 그 주문내역을 PMS에 입력해야 한다. 단, 시스템의 장애가 지속되어 당일 전산시스템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 매매담당자는 거래완료 후 펀드별 배분처리한 후 주식매매내역 수기 입력 요청서를 [별지2]에 따라 작성하여 펀드오퍼레이션팀에 전송해야 한다.
8. 펀드오퍼레이션팀은 [별지2]에 따른 주식매매내역서를 수령할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 회계처리시스템 (HINTS)에 수기로 입력한다.



별지1_주문관리시스템 장애 발생시

[별지 2] 주식매매내역 수기입력 요청서

거래일	거래 유형	펀드 코드	펀드명	KR코드 (12자리)	종목명	주수	단가	약정 금액	수수료	세금	결제 금액	결제일	매매 처	거래 구분	장내외 구분

[별지 3] 사전자산배분 정정신청서



별지3_사전자산배
분 정정 신청서.xlsx